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6.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2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5. 5. 23.

다. 상정일자: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5. 6. 16.)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 가. 제안이유

- 보건소 장기 의료업무 공백 방지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급을 조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 정원관리기관 별 직급별 정원표' 상 직급별 정원 조정
  - ▶ 조정 내용: 6급 이하  $\Delta 1 \Rightarrow$  5급  $+1$ (보건소)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입법예고: 2025. 4. 17. ~ 5. 7. (제출된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보건소 장기 의료업무 공백 방지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급을 조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① 주요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상 직급별 정원 조정

▶ 조정 내용: 6급 이하  $\Delta 1 \Rightarrow$  5급  $+1$ (보건소)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증감	비고
총 계		1,457	1,457					
5급		<u>65</u>	39	1	<u>9</u>	16		
6급 이하 계		<u>1,369</u>	<u>1,369</u>					
↓								
5급		<u>66</u>	39	1	<u>10</u>	16	$+1$ (보건소)	
6급 이하 계		<u>1,368</u>	<u>1,368</u>				$\Delta 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b>총 계</b>	1,457	1,457				<b>총 계</b>	1,457	1,457			
<b>정무직</b>	1	1				<b>정무직</b>	1	1			
<b>일반직 계</b>	1,446	1,446				<b>일반직 계</b>	1,446	1,446			
3급	1	1				3급	1	1			
4급	10	8	1	1		4급	10	8	1	1	
5급	65	39	1	9	16	5급	66	39	1	10	16
6급 이하 계	1,369	1,369				6급 이하 계	1,368	1,368			
<b>전문경력관 계</b>	1	1				<b>전문경력관 계</b>	1	1			
<b>별정직 계</b>	9	9				<b>별정직 계</b>	9	9			
5급 상당	2	1	1			5급 상당	2	1	1		
6급 상당이하계	7	7				6급 상당이하계	7	7			
<b>연구직 계</b>	1	1				<b>연구직 계</b>	1	1			

### ○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재 보건소 보건진료 6급(임기제) 2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1명은 치과의사로 근무중이며, 기존 직원(의사)은 2025년 1월 1일 1일 1인 1인 의원면직하여 현재 1명이 장기공석인 상태로 6급으로 의사를 채용할 경우 낮은 급여로 인해 이직율이 높고 신규 채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진료 6급 정원을 1명 감하고 보건소에 5급 정원을 1명 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보건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28조(시보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0조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